

「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10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건설과장 장근용)

- 다른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 삭제
-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 2 신설)
-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
(안 제4조의 3 신설)
-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·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내용 명시
(안 제4조의 4 신설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공사의

분할발주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 권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,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도록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

-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, 건설관련 단체들의 애로 사항·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